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5. 25 선고 2021가단14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김백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권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경주시 C 대 276㎡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21. 3.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D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1. 3. 17. 접수 제146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당시 E의 대표자인 소외 D은 E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보증약정상의 구상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1) 2013. 6. 11. 보증금액 240,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 보증비율 80%(보증번호 F)

2) 2015. 4. 24. 보증금액 160,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 보증비율 80%(보증번호 G)

나. E는 위 가.항 기재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H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각 금원을 대출받았다.

1) 보증번호 F : 2013. 6. 17. 대출금액 300,000,000원

2) 보증번호 G : 2015. 4. 27. 대출금액 200,000,000원

다. 위 나.항 기재 각 대출금과 관련하여 2021. 5. 1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H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21. 5. 27. 합계 381,753,2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D은 자신 소유의 경주시 C 대 2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21. 3. 1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14603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D,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D의 배우자 I(위 I은 2019. 8. 8.부터 2020. 5. 11.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020. 5. 11. 다시 D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I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의 형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은행(청송군지부)은 2021. 4. 8. 청구금액 90,466,593원의, H은행(성당지점)은 2021. 4. 14. 청구금액 94,631,819원의 각 가압류 결정을 받았던 사실, D 소유의 경주시 J건물 K호에 관하여는 L은행이 2021. 4. 5. 청구금액 5천만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M(채권최고액 150,000,000원)는 2021. 5. 25.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또는 E)은 자금난에 처해 있어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보험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약 2개월여만에¹⁾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

1) 갑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의 적극재산은 시가 89,672,4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경주시 J건물 K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으로 합계 139,172,400원에 불과한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381,753,220원(원금 기준)외에도 위 H은행(청송군지부)에

대한 채무 90,466,593원 상당, H은행(성당지점)에 대한 채무 94,631,819원 상당, L은행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상당, 주식회사 M에 대한 채무 137,895,290원 상당으로 합계 7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D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 피고가 2020. 4. 21. 1억 원을 대여한 채무자가 E가 아니라 D이라고 하더라도, E의 대표이사로서 E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E를 운영하던 동생 부부가(또는 동생 I이) 2020. 4. 21. 피고에게 E의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겠다고 하여 E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않아 독촉을 하다가 담보라도 제공하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받은 것으로, E의 부채관계나 D의 연대보증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4. 21.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인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한달도 되지 아니한 2021. 4. 14.경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금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